기 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⑳ - 전계대원군묘(全溪大院君墓)

전계대원군 天性 仁厚 孝誠과 友愛 극진

최 종 규
포천명유회 회장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전개대원군 묘.

正朝 9년(1785)에 出生했으니 이 분이 바로 哲宗의 生父이다. 恩彦君 의 아들이며 의 아버지는 思悼世子(뒤에 莊憲世子로 追尊)이다. 恩彦君의 兄이 正朝인데 王族으로 江華島로 귀양을 가서 나무꾼이 되었으니 人生無常이라고나 할까

江華 도령은 아들 5兄弟가 있었는데 둘째, 셋째는 일찍 죽고, 큰 아들 常溪君과 넷째 아들 豊溪君(뒤에 思全君으로 入養), 다섯째 아들이 全溪大院君이다.

어릴 적부터 天性이 仁厚하고 孝誠과 友愛가 극진했다. 恩彦君이 江華에서 귀양살이 할 때의 일이다. 洪水가 범람하여서 물이 집안으로 밀려들었다. 大院君은 울면서 여러 兄들을 구해낼 것을 호소했다. 어린 나이에 도량이 이만큼 컸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王孫으로 섬에 귀양살이 하는 恩彦君과 그의 母親을 위로하기 위해 항상 곁을 떠나지 않고 즐겁게 해드렸다. 正宗이 昇遐했다는 소식을 듣고 恩彦君은 "마땅히 大人(正祖)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늙으신 慈親(貞慶宮 洪氏는 正祖와 恩彦君이 같은 兄弟이므로 모두 慈親이 됨)이 아직도 堂上에 계시니 감히 가서 뵙지도 못한 지 이제 15년, 홀로 어머니가 자식을 근심하시는 情理를 생각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하고 통곡했다.

純祖 元年(1801)의 禍厄이 兄弟들에게 圍籬安置되는 律이 適用되었다.

仲兄은 몸이 重病에 걸려 있는데도 看護할 사람이 없으므로 大院君은 곁에서 극진히 간호했다.

全溪大院君은 아들 3兄弟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이 懷平君 明이고, 둘째 아들이 永平君 景應, 셋째 아들이(뒤에 哲宗으로 王位에 올랐다) 哲宗이다.

正祖가 24年間 王位에 있다가 昇遐하자 그의 둘째 아들인 純祖가 王位를 이었는데 34년 후에 純祖가 또한 昇遐하자 그의 孫子인 憲宗(당시 7歲)으로 하여금 王位를 계승하도록 했다. 15년 뒤에 憲宗이 昇遐하자 王位를 이을 後繼者가 없어 결국 全溪大院君의 셋째 아들인 강화도령을 王位에 오르게 하니 이분이 바로 哲宗이다.

哲宗이 王位에 오를 때(1850)는 벌써 全溪大院君이 世上을 떠난 뒤이다. 己酉年 6月 9日 哲宗은 大王大妃의 뜻을 받들어 大統을 入承하여 宗廟社稷과 백성의 主人이 되었다. 그리고 相臣과 禮官에게 諮問하여 生家 아버지를 全溪大院君으로 追封하였으니 이는 故事에 따른 것이고, 그 외 朝鮮組의 德興大院君과 같이 조금이라도 분수에 넘치는 일이 없었다. 또 墓所를 修築하도록 해서 이듬해인 元年에 竣工을 했다.

全溪大院君은 哲宗 7년(1841) 11월 2일 別世하니 나이 57세였다. 처음에는 楊洲郡 神穴面 율0에 恩彦君 墓側에 安葬하였다가 哲宗 7년(1856) 3월26일 抱川市 仙壇洞 王方山 아래로 移葬했다. 神道碑銘은 弘文館大提學 趙斗淳이 王命을 받고 擇했다. 墓碣?은 中樞府事 金左根이 擇했고 領敦寧府事 金汶根이 썼다.

이곳 抱川 仙檀洞에는 全溪大院君墓를 비롯하여 그의 두 아들 懷平君과 永平君 墓가 있고, 이어서 淸安君 李載純墓와 그의 曾孫 豊善君 李漢鎔 墓가 있다.

자·유·기·고

노후(老後)와 자식

강 승 봉
화현면장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져 왔다. 예의 중에서도 부모에게 효행을 보이는 예의는 지극 정성이어서 어느 민족보다 모범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삼년상을 치르기 전에는 상복을 벗지 않았으며 마루에 상청을 준비 해놓고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식사를 거르실 까 염려가 되어 자식이 매일 식사를 챙겨드렸으니 이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우리부모세대들은 효를 다하지 못하면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 외에도 웃어른과 부모에 대한 효행은 많이 있다. 밥상 앞에서는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숟가락을 먼저 들어서는 아니 되며, 식사 할 때는 조용조용히 먹어야 하고, 어른이 방이나 집에 들어오시면 누워있던 자식이나 손아래 사람은 바로 일어나 예의를 보여야 하는 등 등의 예의 범절이 있다.

그런 요즘 신세대는 어떤가. 갑작스런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사회구조로 예의범절은 대충대충 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부모를 모신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드라마에서나 듣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는 월말이나 연말정산으로 한번쯤 하면 되는 것으로 통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는 모르고 부모제사는 마지못해 쉬는 일요일로 정해 모시고하는 것이 요즘 신세대들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어 우리들의 자식들과의 관계도 미리미리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가슴을 치는 큰 후회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실상을 금새 알 수 있다. 마을에는 일할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노인들로 넘쳐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노부부만이 사는 노인들이 우리주위에는 통계숫자를 제시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다.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들은 자식이 없는 분 보다는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를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홀로 산다. 앞으로 이런 사회풍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기 쉽다. 따라서 중년을 맞이하는 4-50대는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것보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 맞기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노후를 지혜롭게 보내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자식과의 관계를 이웃사촌처럼 유지하라. 이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정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의 인격체 관계로 유지하고 부모나 자식간에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상조정신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의타심은 청산해야 한다. 함께 사는데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또한 남같이 멀리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사이라 이웃사촌 같은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다. 서양사람들은 부모자식간은 "국이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따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늙으면 자식들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 옛날 선조 들의 효행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기게 한다.

둘째, 자식대접을 까듯이 하라. 격언에 "어려서는 부모 말씀에 늙어서는 자식의 말을 따르라"고 했다. 자기주장을 너무 세우지 말고 자식을 올바른 성인으로 대하라고 한다. 따로 사는 자식이 행여 자주 찾아오면 좋은 것이고 그렇치 못하여 한 달에 한번 또는 일년에 한번오더라도 손님 맞듯이 까듯이 대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집안도 정리하고 반갑게 맞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에게 다짜고짜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삼가 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정성을 다해도 시큰둥한 자식이라면 그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일 것이다.

셋째. 신세대 노인들의 생활목표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라로 바꾸어야 한다.

이제 효도는 필요 없다. 장성한 자식이 잘 살면 그만이고, 때맞추어 인사치례로 찾아뵈면 되고, 자주 방문이나 전화라도 주고받으면 더 없는 효도다. 더 이상 효의 강요는 가족모두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가족관계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부자지간의 관계며, 이웃 간의 관계, 노후관계, 인척간의 관계 등등이 풍습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의 노후도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자세(고정관념)를 바꾸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바꾸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자신속에 긍정적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노후가 그리 외롭고 고독하지만은 않다.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㉓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과 반대론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우리나라의 경찰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치안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 인한 시국치안과 관련된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의식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경찰 자체에 기인된 내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인권침해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법적 소양과 자질부족, 수사경찰의 인권의식결여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시기상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의 수사권에 대한 실태, 최근의 경찰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노력과 자정의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로 인한 자치경찰제로의 여론 등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론의 입장에서 반대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이어서 수사권을 독립해야 하는 근거를 기존의 주장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후 수사권독립방안,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찬성론)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수사망을 가지고 시민생활과 직접 접촉되면서 수행되는 경찰활동의 당연한 결과로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에게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부여하자는 입법론적 논의를 말한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이루기 위한 시도는 해방 이후 여러 차례 있어 왔다. 특히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유신헌법의 민주적 개정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자 대한경우회에서는 1980년 2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자수사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 제하의 헌법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발표하고, 경찰이 유신체제 당시 정권의 하수인, 부정선거의 하수인이 된 것은 경찰조직과 제도의 불합리성 내지 모순에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유신헌법의 잔재인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다시 수사권독립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과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형사소송법 개정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부여' 또는 공소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는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경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하여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상호비난과 대치국면에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해서 이해당자자인 검찰에서는 독립불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발전 지향적 정책행정학계와 일부 형사법학계에서는 독립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법학계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론으로서 일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반대론에 대한 검토와 수사권독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검찰의 견해는 경찰은 그동안 이른바 '수사권독립'이라는 이름아래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경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전혀 합리성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을 부여한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은 물론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제도이냐 여부에 따라 거론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과 경찰간의 권한쟁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불합리한 논거를 통하여 현 수사제도를 비난함으로써 형사사법 기능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주장하는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 즉 검사는 원래 수사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된 제도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검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경찰의 독자적 강제수사권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찰에 대해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권이 비대화하여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셋째로 법관과 같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수사의 쟁점을 검사로 하여금 미리 정리하게 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이며, 경찰의 지방분권화 및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와 함께 논의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하에서 경찰의 수사권독립 반대론자들의 반대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음호에 계속>

지역언론의 대표주자 포천신문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포천시 의회는
건전한 대안제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포천시의회 :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
☎ 031-535-6140, 538-2522 http://council.pcs21.net